보	도 자 료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배포 일자	2019. 5. 7.(화)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부서 및 담당자	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김은수 센터장 센터장 김은수(051-797-4665, kes1213@kmi.re.kr), - 최나영환 전문연구원(051-797-4770, chnayoung@kmi.re.kr), - 김동환 연구원(051-797-4913, kdong@kmi.re.kr), - 김병주 연구원(051-797-4770, bjkim17@kmi.re.kr),		
보도 일시 2019년 5월 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7.(화) 11:00 이후 보도 가능합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KMI, 우리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컨설팅 지원한다

- 6월 7일까지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등 대상자 공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은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
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대상을 5월 8일(수)부터 6월 7일(금)까지 공모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화주와 해운·물류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실시하는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
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화주와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	산부는	는 동	사업에	2억	원의	예산	을 편성	하여	약 3	3건의	대	상
사업을	지원	할 예	정이며,	선정	된 기	업에는	는 해외	동반	진출	과정	케	필
요한 공	공동 천	건설팅	비용의	최대	50%	까지	지원할	계획	이다	•		

- □ '해운·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분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동일하며, 해운·물류기업, 화주기업 등이신청할 수 있다.
- □ 2019년 동 사업은 3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약 6건의 대상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1건당 최대 1억 원 범위 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 □ 동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6월 7일(금) 오후 5시까지 신청서, 사업제안서 및 증빙서류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방문하거나 우편 으로 제출해야 한다. KMI는 5월 14일(화) 서울, 5월 15일(수) 부산 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모접수 후 서류심사와 선정 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6월 중 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및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051-797-4770, 051-797-4913)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 일정 및 계획〉

일정	주요 내용
'19.5.8(수) ~ 6.7(금)	- 사업 공모(신청서 접수)
'19.5.14(화)	- 사업설명회 개최(서울) · 일시/장소: '19.5.14(화) 15:00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2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19.5.15(수)	- 사업설명회 개최(부산) · 일시/장소: '19.5.15(수) 14:00 / 부산항만공사* 3층 중회의실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19.6.10(월) ~ 6.14(금)	-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 사업제안서 심사
'19.6.17(월) 이후	- 선정결과 발표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2019년 회주-물류기업 해외동반자출 컨설팅 지원대상 모집 안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19년 5월 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1. 신청대상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컨소시엄

- □ 물류기업: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 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 회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해외시장 동반진출 사업

□ (개념)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 시설·판로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네트워크 확보, 현지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

□ 대상사업 유형 예시

- ① (동시진출형)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에 신규 생산시설· 판로 확보,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물류기업은 신규로 진출하는 시장에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② (화주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물류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화주기업과 협력 하여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③ (물류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화주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물류기업과 협력 하여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④ (현지협력형) 현지에 진출한 화주·물류기업이 협력하여 신규 생산시설·판로·물류거점 확대, 신규법인 설립 등 각자의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는 경우

3. 지원내용: 해외시장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 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 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
 -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0백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분담
 -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수 있음

4. 신청방법

- □ 접수기간 : 2019. 5. 8(수) 09:00 ~ 2019. 6. 7(금) 17:00까지
- □ 제출서류
 - o 신청서 1부(<양식 1>,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o 사업제안서 10부(<양식 2>,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ㅇ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양식 3>)
 - o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o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o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1부 (중소물류기업)
 - o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 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는 컨소시업 참여기업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
- □ 접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ㅇ 주소 :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49111)
 - o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5. 선정 절차 및 방법

□ 선정기준

o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7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사업제안서 평가

- o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지원기업은 6인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 사업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 형태의 자료(e.g. PPT, PDF 등)로 발표 가능
- □ 선정결과 발표 : 2019년 6월 17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6. 유의사항

-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및 변조하 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051-797-4770, 051-797-4913)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고문

2019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모집 안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19년 5월 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1. 지원사업의 목적

-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비용을 지원
 -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2. 신청 대상자

-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3. 대상 사업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_ 〈〈 지원대상사업 예시 〉〉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 현지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로 인정되는 사업
- * 조사대상국이 신남방·신북방 대상국일 경우 가산점 부여

4. 지원 내용

- □ '진출사전 지원'과 '현지밀착 지원'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컨설팅 1건당 최대 1억원 범위에서 비용의 70% 차등보조
 - (진출사전 지원) 실제 기업이 현지진출 여부를 확정하기 전, 계획하는 사업의 수익성, 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컨설팅 비용 지원
 - (현지밀착 지원) 기업이 현지진출 여부를 결정한 후, 추진 과정에서 필
 요한 현지 라이선스 취득 등에 대한 현지 컨설팅 비용 지원

〈〈 타당성조사 보조금 지원 기준 〉〉

기업규모		기업규모	지원비율	비고	
지원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조사비용의 최대 70%		
비율	대기업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	조사비용의 최대 70%	최대 1억원	

- * 기업별 실제 지원비율과 지원액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지원조건)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9. 5. 8(수) 09:00 ~ 6. 7(금) 17:00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1	신청서 1부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양식 1		
2	사업제안서 10부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양식 2		
3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양식 3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세무법인 발행) -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				
6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접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6. 선정절차 및 방법

선정	절차

- 1차 서류심사와 2차 평가위원회 심사로 진행되며, 2차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7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2차 심사 일시·장소는 별도 공고 혹은 기업에 개별 통지되며, 신청 기업은 신청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 선정결과 발표 : 2019년 6월 17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7. 유의사항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 · 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사라니라 그 하시면 사기 사람이나 사기의
시청기가 즈 저스티 서르느 이저 바하치기 시내하

- □ 신청기간 중 섭수된 서류는 일설 반완하지 아니함
-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
-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0, 051-797-4913)로 문의 바람